



Tax News Flash

2014 세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 2014. 12. 26.

2014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법개정 시행령안은 지난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8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며,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15년 1월 30일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개정안 입법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첫째,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에 따라 그 세부 과세기준인 과세기준율(투자포함방식: 80%, 투자제외방식: 30%), 과세대상소득(각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가감하는 방식), 투자의 범위, 배당 등의 범위 및 임금 증가액 산정 방식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국외손회사를 제외하는 한편,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을 일괄한도와 국별한도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에서 국별한도방식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판정기준 중 토지 보유기간의 80%를 초과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판정기준을 60%로 인하하는 등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고,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자료제출의 무의 불이행시 과태료(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 이하, 단, 5천만원 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임원에게만 적용되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중간정산하는 경우)를 2015.12.31. 이전에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 예고되었습니다.

다섯째,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 생산량비례법에 따라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가산이자

율을 인하(연간 10.95% → 연간 2.9%)하였고, 정부로부터 무상 할당받는 온실 가스 배출권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 첫째. 중소기업 규모기준 및 관계기업 판정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중소기업 졸업기준의 경우 매출액 기준과 자산총액 기준만 유지하는 것으로 개정예고 하였으며, 관계기업이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졸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중견기업 요건에 독립성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그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 둘째, 합병 등으로 피합병법인 등의 사업 일부를 승계한 경우 합병 등 전에 피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일반R&D비용은 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일반R&D비용으로 보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행 산식과 같이 매출액 등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셋째,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50%)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특정하였고, 중소기업의 기술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25%) 대상인 '자체개발한 특허권 등'을 정의하였으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대상자를 축소 개정하였습니다.
- 넷째,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우대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중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제외한 업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다섯째,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하되,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 및 1억 2천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를 제외하고, 평균임금 증가율 계산방법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여섯째, 가업의 사전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여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요건 중 하나인 근무인원비율의 판정기준일을 현행 이전일에서 이전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로 완화하였습니다.
- 일곱째,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에 따른 고배당 상장기업의 요건,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의 계산방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 여덟째,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중 종업원용 임대주택, 직장어린이집, 사내 부속의료기관, 창고시설 등에 대해서는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그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첫째, 선진국의 과세기준 및 유사 업종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금융·보험 용역 중 은행법에 따른 보호예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전 신탁업·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 등 본질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전환하였습니다.

둘째, 2015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전자적 용역 범위를 저작물·콘텐츠로서 국가정보화기본법상 정보로 가공·제작된 것, 소프트웨어, 전자 문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컴퓨터나 이동통신단말기기 등을 통해 구동·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간편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등록신청·신고시 기재 사항과 납부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발급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셋째, 승용자동차 등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 업종에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을 추가하고, 영세율 적용 대상 외화 획득 용역에 병원 등 의료기관이 해외 제약사 등에게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을 추가하였으며,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 및 인터넷 신문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의 경우 3년간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첫째,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1년 → 183일)하고, 임원의 경우 연봉제 전환을 통해 재직 중에도 퇴직소득을 중간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2015.12.31. 이전에 퇴직소득을 중간지급받는 경우까지만 허용하며, 퇴직소득 한도(3배) 적용 대상 퇴직금을 근무기간 Base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허용하였으며, 직장공제회 반환금을 분할 지급시 그에 따른 이익도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범위에 포함하고, 분할지급시의 세액계산방법,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2016년부터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도입이 예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과세대상을 KOSPI 200선물·옵션 및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등으로 규정하고, 탄력세율을 10%로 정하는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양도시 저율로 과세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 기준이 되는 부동산비율 계산시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과 다보유법인의 주식가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넷째,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한 개인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1천만원 →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 단, 5천만원 한도)하였고,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개정예고하였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첫째,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과세 기준일인 증여시기를 개발사업의 지정고시일, 사업의 인가·허가일 등으로 명확히 하였고,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금전차입시 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둘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판정시 최대주주 중에서 본인과 사용인을 제외한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본인과 본인의 친족 등"이라 함)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수혜법인의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 등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첫째,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출 관련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고,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신청대상 등을 신설하였으며,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차입금 산정에 포함되는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친척관계(혈족·인척 등)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임원·사용인 등)가 있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해당 외국법인이 보유한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간주하여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의 명의로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는 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국제거래명세서 미제출시 과태료(1천만원)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과태료를 인상(4~10% → 10~20%)하되,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기한후 신고시 과태료 감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교육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첫째, 경정청구에 의해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경정청구일부터 기산하도록 개정하였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률과 동일하

게 상향조정하였으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인상(건별 50만원→건별 100만원)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세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통화선도 등 평가손익을 포함하되,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하도록 개정하였고, 교육 세과세표준신고서 별지 서식 부표를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배관연결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요구되는 사항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이 실제 시행령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요구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도입에 따라 세부 과세기준이 개정 예고되어 있는 바, 이미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여러 논란 외에도 과세대상소득인 기업소득 산정시 사외유출이 명백한 항목들에 대한 차감대상 포함 여부, 투자·임금·배당 등의 범위에 사용수익기부자산, 인정상여, 인정배당 등의 포함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별첨 p.26 '(4)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 기준율 및 과세대상 등 규정' 참조

둘째,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중소기업 졸업기준 중 매출액 및 자산총액 기준만 유지하는 등 중소기업 요건이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예고되어 있으나, 특정 제조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규모기준이 졸업기준을 상회하여 규모기준에 의하면 중소기업이나 졸업기준에 의해 중소기업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바,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이 이러한 기준간 상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별첨 p.35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 조정' 참조

셋째, 조세특례제한법상 서비스업 영위 기업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대상자산, 내용연수의 가감 범위 등 그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이 예고되어 있으나, 현행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적용요건은 보다 엄격한데 반해, 특례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은 바, 제도 도입의 취지 및 실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법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별첨 p.47 '(13) 서비스업 설비자산 가속상각 세부사항 규정' 참조

넷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한도의 2배 인상에 따라 세부 과태료의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데,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고, 소명의무를 거주자(개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내국법인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별첨 p.117 '(7)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인상' 참조

다섯째,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금전 차입시 담보로 제공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재산가액 × 적정이자율(8.5%) - 지급이자"로 계산하도록 개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담보로 금전을 차입한 경우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직접 대출받은 경우(상증법 §41의 4)가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고 있어, 본 개정안의 취지에 따른다면 사실상 수증자가 향유한 경제적 이익은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담보로 제공받은 재산가액 보다는 차입금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출자의 신용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의제되는 적정이자율(8.5%)을 적용하는 것은 시가주의 원칙에 반하는 바,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입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별첨 p.89 '(3) 담보제공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의 명확화' 참조

여섯째, 납세자의 경정청구로 국세가 환급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종래의 국세납부일 등에서 경정청구일로 변경하도록 하는 개정이 예고되어 있으나,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로서 지급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법적 성질, 납부불성실가산세와의 형평성 문제,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을 예외없이 납세자 귀책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입법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43조의 3 제1항 제5호 참조

일곱째, 타인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사유에 대한 증여시기를 명확화하는 것으로 개정예고되어 있는 바,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일을 증여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사고 발생일 현재 및 그 이후 상당기간 동안 보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어 보험사고 발생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둘 이상의 재산가치 증가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의 증여시기 판단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이는 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그 증여시기를 입법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별첨 p.88 '(2)타인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의 경우 증여시기 명확화' 참조

기타 상세한 개정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전문가들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일회계법인
대표 고성천

Contacts

국제조세 주정일 709-0722 jijoo@samil.com	내국세 오연관 709-0342 ygoh@samil.com	이전가격 및 국제통상 이희태 3781-9083 htlee@samil.com	금융세무 윤인희 709-0542 ihyun@samil.com
이상도 709-0288 sdlee@samil.com	박승선 709-0621 sspark@samil.com	헨리안 3781-2594 henryan@samil.com	글로벌 서비스 이중현 709-0598 alexlee@samil.com
김성영 709-4752 sykim@samil.com	황철진 709-0759 hcj@samil.com	전원엽 3781-2599 wychon@samil.com	김주덕 709-0707 michaelkim@samil.com
김상운 709-0789 swkim@samil.com	정찬우 709-0692 cwchung@samil.com	조정환 709-8895 jwhancho@samil.com	삼일조세정책연구소 송상근 709-0559 sksong@samil.com
이동복 709-4768 dongblee@samil.com	이영신 709-4756 yslee@samil.com	해외파견세무 정연성 709-0538 yschung@samil.com	
신현창 709-7904 hcshin@samil.com	정민수 709-0638 minsjung@samil.com	상속증여 및 주식변동 이현종 709-6459 hyunjonglee@samil.co m	
조세불복 조남복 709-0501 njjo@samil.com	김진호 709-0661 jhokim@samil.com		
	정복석 709-0914 bsjung@samil.com		

본 자료의 내용은 고객에게 관심 있을 만한 사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로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법 및 관계 법령 관련 영향이나 적용은 관련된 특정 사실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삼일회계법인의 상기 전문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2014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